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8
------	------

2023. 12. 18.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1일, 박수빈 의원 외 15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박수빈 의원)

### 가. 제안이유

-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상향함으로써 자치구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서울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안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안 제3조제1항제6호)

### Ⅲ.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서울시 재원을 통해 균등한 안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100%로 조정하려는 것임.

#### 나. 시비 보조금 기준보조율의 근거 및 취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sup>1)</sup>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2021. 7. 13.) 표준조례안을 통해 분야별 기준보조율은 ‘조례’로, 사업별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8개 분야별로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제3조제1항).

---

1)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 조례상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의 범위 >

분야	하한선(%)	상한선(%)
사회복지	30	100
공원·환경	30	100
도로·교통	30	50
도시계획·주택정비	30	50
산업경제	30	70
<b>도시안전</b>	<b>30</b>	<b>50</b>
문화관광	30	100
일반행정	30	50

- 이와 같이 상기의 법률이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조례를 통해 기준보조율을 정하도록 명시한 취지는 지방보조금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시·도와 시·군·구간 적정 재원 분담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 동 개정안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에 적용되는 분야별 기준보조율 중 ‘도시안전’ 분야의 기준보조율의 상한선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도시안전 : 30%부터 50%까지	도시안전 : 30%부터 100%까지

- 현행 기준에 따르면, 도시안전 분야와 관련한 시비 보조사업의 상한선은 50%로,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최대 5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공원·환경,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기준보조율 상한선이 100%이고,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안전 분야도 기준보조율 상한선을 100%로 상향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sup>2)</sup>
- 특히 동 개정안에 따라 기준보조율의 상한선을 100%로 상향하는 경우 도시안전 분야에서 자치구에 대한 균등한 지원 기회를 확보하고,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적정 재원분담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을 설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시비보조율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 여건<sup>3)</sup> 등을 고려해 규칙에서 정해지므로 동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입법 의도가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임.

---

2)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안전 분야의 기준보조율 상한선을 100%로 규정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2호(공공질서 및 안전: 30% ~ 100%)

3) 최근 5년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 통계는 참고자료 참조.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시	종로구	81.4	82.1	82.9	85.2	84.6
	중구	94.7	95.4	96.5	97.8	<b>97.8</b>
	용산구	78.5	78.9	80.8	82.6	82.7
	성동구	63.7	64.2	67.0	72.4	71.8
	광진구	62.3	62.4	64.9	66.7	66.6
	동대문구	57.2	53.5	57.3	60.0	<b>59.8</b>
	중랑구	52.7	51.7	57.4	57.4	<b>57.8</b>
	성북구	50.2	48.4	51.5	54.6	<b>55.2</b>
	강북구	53.2	52.8	57.0	54.5	<b>56.0</b>
	도봉구	51.1	50.4	53.8	54.4	<b>53.7</b>
	노원구	43.0	45.4	49.7	51.6	<b>51.6</b>
	은평구	55.2	54.9	58.4	57.2	<b>57.6</b>
	서대문구	58.9	59.5	63.2	64.9	65.2
	마포구	72.9	72.4	73.8	77.8	77.7
	양천구	58.2	58.4	60.6	65.0	65.0
	강서구	60.9	61.5	64.3	66.1	66.2
	구로구	56.0	55.8	59.4	61.5	61.6
	금천구	61.9	60.4	63.4	65.1	65.6
	영등포구	77.8	77.9	79.2	81.7	81.9
	동작구	61.7	61.2	63.3	65.6	65.4
관악구	54.5	52.7	55.3	56.4	<b>55.8</b>	
서초구	97.9	98.2	99.1	99.9	<b>99.9</b>	
강남구	182.3	203.1	204.3	166.8	<b>158.1</b>	
송파구	87.4	89.2	90.6	92.0	<b>92.2</b>	
강동구	62.4	62.2	64.4	68.2	68.8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통계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00

※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100%보다 높으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한 것을 뜻하며, 재정개선 목표설정엔 직·간접적인 기준이 됨.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29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1일

발 의 자: 박수빈, 김영철, 김원태,  
민병주, 박승진, 봉양순,  
서준오, 아이수루, 왕정순,  
, 유정희, 이민옥, 이영실,  
이원형, 임만균, 전병주,  
홍국표 의원(16명)

## 1. 제안이유

-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상향함으로써 자치구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서울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안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안 제3조제1항제6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5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 번호

2023100600000028

##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박수빈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수일 : 2023.10.6.

회신일 : 2023.10.12.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제6호 도시안전분야의 기준보조율을 ‘50퍼센트 까지’ 에서 ‘100퍼센트까지’ 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제3호 도시안전 분야 기준보조율의 최대범위를 3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관련부서인 재정담당관 및 예산담당관에 문의한 결과 2023년 본예산 기준, 도시안전분야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은 26개이나 기준보조율 변경시 각 사업에 대한 25개 자치구별 구비 편성 총괄현황이 없고 또한 각 사업마다 상위법령에 따른 매칭방법 등이 달라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 참고자료로 2023년 본예산 기준, 도시안전분야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현황을 붙임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붙임 > 2023년 서울시 도시안전 분야 지방보조금 대상사업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지방보조금액	비고
1	예비군 육성 지원	350,000	
2	시민 안보의식 함양	214,810	
3	시민 안보의식 함양	19,000	
4	민방위교육운영비	583,843	
5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4,225	
6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6,651	
7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78,340	
8	일반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8,100	
9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지원(자치구)	129,200	
10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990,000	
11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 사업	3,000,000	
12	집중안전점검 활성화	200,000	
13	재난심리회복 지원	81,824	
14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	407,232	
15	시민 안전교육 강화	714,000	
16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250,000	
17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22,000	
18	제설대책추진	6,074,000	
19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69,876	
20	재난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200,000	
21	국가하천 유지보수	6,925,000	
22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11,546,000	
23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90,000	
24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250,000	
25	협력단체 지원(전환사업)	468,530	
26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전환사업)	6,797,309	